

교회음악대학원 학사시행세칙

개정 2003. 9. 1.

개정 2016. 4.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회음악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 본 교회음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시간은 교회음악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회음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실기고사와 면접고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4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3. 백분율로 기재된 출신대학교(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서류

제5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고사,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 학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시험이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입학사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①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

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5학기) 및 재학년한(휴학기간을 제외한 8학기)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④ 재입학 시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제 3 장 등록, 학적, 전공변경 및 부전공제도

제10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제11조(등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합격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수업개시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12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은 재학 중 4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위 제③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위 제③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제13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수업료 및 납입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제15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제16조(전공 변경) ① 전공 변경은 2차 학기 前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공 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의 주임교수로부터 학점심사를 거쳐 인정된 학점 외에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전공 제도) ① 본 대학원은 1차 학기 이수 후 전공지도교수와 본인이 신청 하려는 부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고 부전공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부전공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증명서 발급)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 ② 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학위수여증명서

- ④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과정, 선수과목, 학점이전,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 1 절 교과과정

제19조(교과과정 개편)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제20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타과목의 개설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2조(실기지도교수배정) 본 대학원의 실기과목 지도교수 배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선수과목

제23조(선수과목) ①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② 선수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해당되며, 이수학점에도 산입된다.
- ③ 선수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학점 이전

제24조(학점이전) ① 본 대학원으로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대학원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으로 한다.

- ② 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7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점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 ④ 학점이전을 원하는 자는 학점이전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점이전은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제 4 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25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 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은 본 대학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개시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 ④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을 지도할 수 있다.

제26조(수강철회) ① 수강철회는 당해학기 수업개시 후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본 대학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철회 과목은 당해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수강철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수업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 5 절 학점 및 성적

제28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료 학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성적평가) ①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 정기시험을 치를 경우 대학원장은 시험개시 2주전에 시험 시간표를 공고한다.

③ 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2.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그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④ 정기시험에 부득이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시험기일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교과목 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졸업 연주

제33조(졸업연주 신청) 졸업연주 신청은 4학기 부터 졸업전 마지막 학기 3월 혹은 9월중에 신청서와 함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4조 <조 삭제 2016.4.1.>

제35조(연주 규모) 졸업연주회의 규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연주 장소) 본 대학원 음악홀뿐 아니라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오르간전공자의 졸업연주 장소는 중형 이상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6조(심사위원) ①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 혹은 대학원장을 대리한 교수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기 '졸업연주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회) ① 심사위원들은 '졸업연주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② 참관 교수 중 2인 이상이 2.5이하의 평점을 준 경우는 통과될 수 없다.

③ 졸업연주 통과여부에 따라 졸업연주(0학점) 과목 평가를 Pass / Fail (표기:P/F)로 표기한다.

제38조(재연주) 졸업연주에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연주할 수 있다.

제 6 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4차 학기 등록시에 전공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0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1조(논문지도교수 승인)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지정된 일자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는 4차 학기부터 실시하며 논문 지도비는 4차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3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5학기 이상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
2.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②항에 명시된 수료학점 취득(취득예정자 포함) 및 이수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대학원학칙 제27조 제②항에 명시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는 졸업연주에 통과한 자

제44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4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제45조(논문제출시한) 석사학위청구논문은 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 정해진 기일 내에 본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논문심사

제49조(심사구분)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제50조(심사절차)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52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제53조(논문점수와 등급)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각각 “논문심사 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54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논문심사 종합결과표’와 논문 심사종합결과 보고서’를 대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 종합 결과보고서’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논문확인)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제 1 절 졸업사정

제56조(졸업사정대상)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연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내용 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한 자.

제57조(졸업사정절차) ① 대학원장은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졸업사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 학년 성적증명서
2. 졸업 연주회 심사결과 보고서
3.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종합 결과표
4. 전례활동 평가서

제 2 절 학위수여

제58조(학위수여) ① 학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별 학위 명칭은 대학원 학칙상의 별표 2와 같다.

③ 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제 8 장 공개강좌

제59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0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운영)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 9 장 장학금 및 징계

제63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4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장 직제 및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

제65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운영위원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7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8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주임교수

제69조(전공주임교수)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 전공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②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의 당해 전공부문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제 12 장 전례 활동

제70조(전례 활동) 학교의 개교이념에 따라 본 대학원의 모든 재학생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가톨릭 전례활동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의 제정으로 구 교회음악대학원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분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교회음악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2조, 제34조)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